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여야 할 재산의 변경계획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당리동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일부 부지의 매각 기피에 따라

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접 대체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주차장을 건설코자 함.

### 《취득재산 변경현황》

구 분	소 재 지	지 목	면 적(m <sup>2</sup> )		사 업 비 (시설비포함)	비 고
			부 지	건 물		
당초	계		252	209.61	58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매입:149m<sup>2</sup>증가</li> <li>• 건물매입:71.11m<sup>2</sup>감소</li> </ul>
	당리동 78-1	대지	173	72.22		
	당리동 79-1	대지	79	137.39		
변경	계		401	138.5	589백만원	* 주차장 20면 건설
	당리동 78-1	대지	173	72.22		
	당리동 83-18	대지	228	66.28		

##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제7조)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

## 4. 검토의견

### □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주차여건이 열악한 당리동 78-1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변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7. 12. 24. 우리구 의회로부터 사업대상 부지 2필지에 대한 취득승인을 받았으나

이중, 당리동 79-1번지는 부지 소유자가 생업수단 상실 등을 이유로 토지 매각을 계속 기피하고 있음

### □ 이러한 여건 하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당리동 83-18번지 대체부지는 당초 계획부지에 비해 면적도 늘어나고, 입지여건도 좋아진 반면, 사업비 증감은 발생하지 않는 이점이 있음.

### 《사업부지 대비》

구 분	위 치	부지면적	사업비	주차장 형태
당초부지	당리동 79-1	79㎡	589백만원	공작물식
대체부지	당리동 83-18	228㎡	589백만원	지평식

※ 부지면적은 증가하였으나 건물면적이 감소되어 사업비 불변

□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

당초 대상부지에 대하여 수차에 걸친 매입 협의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기피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될 시에는 주변 주민들의 주차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변경계획안과 같이 인접한 다른 부지를 매입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원안가결 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판단됨.

2008. 4. 22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선

# 《 관 계 법 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